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12 제출연월일 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3항제3호 중 "승인을 받은 후"를 "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 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허가취소 등) ①・② (생	제25조(허가취소 등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③ 시・도지사는 수집・운반업	③		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			
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			
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			
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3. <u>승인을 받은 후</u> 1년 이내에	3.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		
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	어이		
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			
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			
경우	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		